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811호
----------	---------

제출년월일 2026. 8. .
제 출 자 정영혜 의원 외 8명

1. 개정이유

- 본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 예방접종 범위 확대 및 지원 대상을 별표로 체계화하고, 접종 절차 등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예방접종 접근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안 제2조, 제7조)
- 백일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근거 신설(안 제3조)
- 지원 대상, 접종 절차 규정 정비(안 제4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현행 자치법규 :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 협의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8. . ~ 2026. 8. .

나)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6. 7. . ~ 2026. 7. .

나) 협의결과 :

3) 관련부서 : 감염병관리과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예방접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2. 인플루엔자
3. 백일해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제4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 및 기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4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절차)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2.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자**”를 “**날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방접종 지원 대상 및 기준(제4조 관련)

접종 종류	지원 대상자	지원 기준
대상포진	·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1회
인플루엔자	·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인 ·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매년 1회
백일해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 이내의 임산부와 배우자 및 그 부모	1인 1회 (단, 임산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 접종 대상자 및 기준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원 조달 방안 등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 ----- ----- ----- ----- 마련----- -----.
제3조(예방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1회) 2. 인플루엔자(매년 1회)	제3조(예방접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u>대상포진</u> 2. <u>인플루엔자</u> 3. <u>백일해</u> 4. <u>사람유두종바이러스</u>
제4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65세 이상의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u><삭 제></u>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은 제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호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6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방문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삭 제>

제6조(지원절차)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2.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비용 환수 대장에 따라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1. (생략)

2.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는 서류

제7조(환수조치) -----

-----.

날짜 -----.

1. (현행과 같음)

2. ----- 사람이 -

[별표 1]

예방접종 지원 대상 및 기준(제4조 관련)

접종 종류	지원 대상자	지원 기준
대상포진	·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1회
인플루엔자	·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인 ·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매년 1회
백일해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 이내의 임산부와 배우자 및 그 부모	1인 1회 (단, 임산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 접종 대상자 및 기준에 따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1조에 규정된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시기,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국민들에게 안내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은 접종대상자를 진찰할 때마다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유
2.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의 중요성, 접종시기,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내역의 기록 및 보관의 중요성 및 필수·임시 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의 차이에 대해 교육·홍보
3.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 접종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는 예방접종 시행 전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영문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함

④ 보건의료기관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주의사항 등) ① 의료인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
2. 제1호의 판단 결과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접종의 금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접종을 해서는 아니 됨. 단, 금기사항이 아닌 경우를 금기사항으로 잘못 적용하여 접종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주의

② 의료인은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예방접종의 이점과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접종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은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에 관련된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1. 접종대상자의 인적사항

2. 접종명, 접종차수, 백신제조번호, 접종일자, 접종방법 등 접종내역

④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는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며, 접종 후 백신과 관련된 심각한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한다.

⑤ 보건의료기관은 백신 구입 시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제조 연월일, 제조회사, 제공자(공급회사 또는 국가기관), 백신제조번호, 유효기간, 구입량 및 재고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접종 전까지 백신의 역가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적절한 용기와 방법을 사용하여 백신을 운반·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제2조에 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준용) 이 고시는 별표 1에 규정된 접종대상 이외의 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⑫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대상
 - 12세~26세 여성
 - * 단, 18~26세 여성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함
 - 12세 남성
 - 조혈모세포이식환자
- 표준접종시기
 - 12세~14세는 0개월,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한다.
 - 15세~26세는 0개월, 2개월, 6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을 실시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 법 제86조의3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의약품인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3. 법 제41조에 따른 약국제제(藥局製劑)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인 경우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6호에 따른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86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외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이하 “피해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인 경우

제7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 법 제86조의3제3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경우 유족의 순위는 전단에 열거된 순위(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서 전단에 열거된 순위에 따른다)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또는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신청인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나.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소견서 등 신청인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투약내역서(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진료확인서(진료비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하며,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진료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마.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장애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망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

2. 장례비의 경우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장례비와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미지급 진료비 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1. 지급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의 서류

2. 신청인이 미지급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순위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3. 신청인이 사망한 지급대상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4. 제3항제1호 각 목의 자료 중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 21.>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예방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1회)
2. 인플루엔자(매년 1회)

제4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65세 이상의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은 제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호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방문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 대장에 따라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대장 등 관리)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조제3호,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6년 ~ 2030년
- 추계 목표 접종자수

연 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백일해 목표 접종자수	320명	5,560명	5,699명	5,838명	5,977명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목표 접종자수	-	5,882명	9,055명	9,338명	9,555명

※ 목표 접종자수: 2028년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을 반영하여 증가 산정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14,128	2,245,474	3,330,610	3,432,747	3,512,884	12,535,843
백일해 예방접종	시비	14,128	245,474	251,610	257,747	263,884	1,032,84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시비	-	2,000,000	3,079,000	3,175,000	3,249,000	11,503,000